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심사요건을 정비함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 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안 제7조 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 중인 학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 나. 상속·이농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9조제1항 개정)
-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 개정)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8조의3 개정)
- 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을 구체화함(안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 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 부지면적을 명확히함(안 제29조제7항제4호의2 개정)
- 사. 농업법인의 농지전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제9호 신설, 안 제3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농지전용규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신설)
- 자. 농지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신설)
- 차. 농지대장 변경신청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70조의2, 제81조, 별표5 신설)
- 카.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 타. 농지 처분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이외 금융기관을 규

정함(안 제74조, 신설)

- 파.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안 제75조, 개정)
- 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를 “「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를 “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를 “법 제6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서에 의해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의 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8호”를 “법 제1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59조”를 각각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60조”를 “제61조”로 한다.

제24조의3제3항 중 “조정안을 수락한”을 “조정안을 수락한”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 중 “부지”를 “토지”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을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면 조사”를 “서면 또는 도면 조사”로, “도면과”를 “실태조사의 내용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휴농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2. 농업진흥지역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3.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조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 및 그 분석자료, 관련 도면 등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시설”을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의2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유통·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를 “자에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것

제37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사업이 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를 받으려는 자에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사업일 것

8.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것

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전용규모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헥타르 이상을 전용하려는 경우
2. 100헥타르 이상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이 되는 농지 전용규모 면적 적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존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전용하려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5헥타르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④ 제71조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및 협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의 경우 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내용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한다.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

(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자 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지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농지관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농지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각각 100분의 35 이내의 범

위에서 구성하여야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농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63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농지위원회 위원 자격) ① 농지위원회 위원 중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임명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지위원회 위원 중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

라. 감정평가사

제6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농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64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46조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지위원회 위원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농지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농지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호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4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농지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농지위원회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앞에 “제4절 농지대장”을 삽입한다.

제70조의 제목 “(농지원부의 작성)”을 “(농지대장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는”을 “농지대장(農地臺帳)은”으로 한다.

제4장제4절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의 범위)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 또는 제방.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축산물 생산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 온실

나. 벼짓재배사

다. 축사

라. 곤충사육사

마. 농막

제71조제5항제2호 중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를 각각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하고,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5조(중전의 제74조) 제1항 제6호 본문 중 “농지원부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1천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76조(중전의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75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을 각각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중전의 제76조) 제1항제3호 중 “제61조”를 “제6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2조”를 “법 제6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5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제79조(중전의 제78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제80조(중전의 제7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2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구성하는 경우

별표 2 제3호머목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로,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하며, 같은 호 서목 중 “사료”를 “제29조제7항제4호의2의 사료”로 하고, 같

은 호 모목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초목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를 “아래”로 하며, 같은 호 초목1)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 중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하며, 같은 11)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을 “같은 법 제23조제2항”으로, “3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투목 및 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 「산업집적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설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제6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도시사업구역 중 제8조·제21조에 따라 확정·승인받은 종합계획·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5조제1항(농지대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75조제2항, 제77조제5항, 제79조, 제80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의2제3호라목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3제1호자목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1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6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5.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4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8.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단위: 퍼센트)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0	100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100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50	50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단위: 퍼센트)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중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질은 제외한다)	100	100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100	100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100	100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0	50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00	100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0	50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카.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0	100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100
파. 초지조성용지	100	100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너. 제29조제2항제3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시설·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100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머.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어.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50	100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 시설	0	50
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50	100
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 의 경우 에는 10 0)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 의 경우 에는 10 0)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	50	50
고.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1)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00	100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3)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모.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협동어린이집 과 민간어린이집	100	100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0	100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수도권 정비계획 법」 제2 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	100	100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50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50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00	10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 이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감면하되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15) 「공해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투. 「산업집적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0	50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설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제6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도시사업구역 중 제8조·제21조에 따라 확정·승인받은 종합계획·개발계획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비고

1. 제3호거목·너목·러목·머목·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허가·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text{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text{전체 농지전용면적} \times \frac{\text{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text{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5]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①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생략)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

②-----

----- 다음 -----

1. ----- 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

2. (현행과 같음)

3. ----- 농업경영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 략) <신 설> <신 설>	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 ----- ----- 4. ----- ----- ----- ----- ----. ---- 법 제6조제2항제9호----- ----- -----. 5. (현행과 같음) 6.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서에 의해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③ (생 략)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아. (생 략)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	---	--	--

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9조-----
차.·카. (생 략)	차.·카.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7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3. ----- 제60조-----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제60조-----
5.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제60조-----
6.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 제6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생 략)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u>조정안을 수락한</u>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u>조정안을 수락한</u>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 역을 해제하는 경우	1.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제 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 정한다.	다.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농업진흥지역 실태조 사의 범위 및 방법) ①법 제31 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 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 법) ① ----- ----- 실태조사----- ----- -----.
1.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	1. 유휴농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2.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2. 농업진흥지역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 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 의 현황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 업진흥지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 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 한 조사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 사	3.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효율적인 농업진흥 지역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4. ----- 농지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도면 조 사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과 현 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 서면 또는 도면 조사----- 실태조사의 내용과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 조사 자료의 분석 및 도면의 관 리 등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
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신 설>

② ~ ④ (생략)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row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 7. (현행과 같음)

8. -----

-- 자에게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

9.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제공
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③・④ (생략)

②

1. ~ 6. (현행과 같음)

7.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사업이
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변경 허가를 포함)를 받으려
는 자에게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사
업일 것

8.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하려는 자에
게 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것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①-----

1. (현행과 같음)

2.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

-----.

-----.

-----.

-----.

-----.

-----.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 ③ ~ ⑥ (생 략)

<신 설>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전용규모 등) ① 법 제37

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

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헥

타르 이상을 전용하려는 경우

2. 100헥타르 이상 농지를 전용

하려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관

리위원회 자문 대상이 되는 농

지 전용규모 면적 적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

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
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과 그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
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
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
전용신고를 받은 농지전용에 관
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존의 농지전
용허가 및 협의 또는 농지전용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
아야 한다.

1. 전용하려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5헥타
르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④ 제71조에 따라 농지전용에

<신 설>

관한 허가 및 협의 권한이 시&#
8231;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의
경우 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내용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농지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한
다.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구
성) 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
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신 설>

-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이해관계자 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지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의 운

영) ① 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농지관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농지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1. ~ 4. (생략)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제3절 농지원부
<신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절 농지위원회
제61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
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
는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하되, 각각 100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농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
며, 간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
명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신설>

받은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63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농지위원회 위원 자격) ①
농지위원회 위원 중 법 제4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
은 임명일 직전 3년 이상 계속
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지위원회 위원 중 법 제45
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자
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변호사
 - 나. 공인회계사
 - 다. 세무사
 - 라. 감정평가사

제6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농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농

<신 설>

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
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64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
지위원회 위원장은 농지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지위원
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46조제1호의 사항을 심
의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
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는 농지위
원회 위원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지위원
회 위원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
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
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
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⑤ 농지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각종 사무
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농지위원
회는 법 제46조제1호 사항에 관

<신 설>

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4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농지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농지위원회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신 설>

제4절 농지대장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
----- 농지대장(農地臺帳)은 -----
-----.

제70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의 범위)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 또는 제방.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축산물 생산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 온실

나. 버섯재배사

	<u>다. 축사</u> <u>라. 곤충사육사</u> <u>마. 농막</u>		<u>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u>
제7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7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u>금고 및 중앙회</u>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채신관서</u>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⑤ -----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u>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u>중소기업은행</u>
2.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u>정보시스템</u> ----- -----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u>한국산업은행</u>
<u><신 설></u>	제74조(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u>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u>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수수료) ①-----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u>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u>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u>	6. 법 제50조에 따른 <u>농지원부등본</u>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u>1천원</u> .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6. ----- <u>농지대장등본</u> ----- <u>500원</u> . ----- ----- ----- -----.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②----- -----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 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 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 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③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농지대장을

제7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법 제63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3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제77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의3. (생 략)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 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 금의 부과·징수

② ~ ④ (생 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도지 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 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교부 및 자정증명 발급

⑥ (생 략)

제77조 (생 략)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② (생 략)

-----.

1. ~ 2의3. (현행과 같음)

3. ----- 제62조-----

4. 법 제63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3. (현행과 같음)

4. ----- 농지대장

5. ----- 농지대장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 (현행 제77조와 같음)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의2. (생략)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생략)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생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 10. (생략)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③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농지대장

3. ----- 농지대장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자료의 제공 요청) -----

-----.

1. (현행과 같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 10. (현행과 같음)

11. -----

<u>농지원부</u>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u><신 설></u>	<u>농지대장</u> ----- ----- ----- <u>제8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5